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기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385

발의연월일: 2022. 11. 22.

발 의 자 : 홍기원 · 강민정 · 강준현

김경협 · 김승원 · 김종민

민홍철 • 박상혁 • 박영순

소병철 · 신영대 · 신현영

오기형 • 유정주 • 윤후덕

이소영 · 이용빈 · 이원욱

장철민 · 주철현 · 허 영

홍성국 · 홍정민 · 황운하

의원(2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두어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일정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도차량의 운행상황을 기록 하고 교통사고 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재 전국의 철길 건널목 808곳 중 667곳이 관리인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고, 최근 5년간 철길 건널목 사고 50건 중 38건이무인 건널목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무인 철길 건널목 중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곳은 단 4곳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하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철도차량의 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파 악하고 교통사고나 범죄의 발생 시에 경위를 파악함으로써 철도 이용 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9조의3제1항제4호). 법률 제 호
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의3제1항제4호 중 "변전소"를 "변전소 및 「건널목 개량촉진법」에 따른 건널목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의3(영상기록장치의 설치·	제39조의3(영상기록장치의 설치·
운영 등) ① 철도운영자등은	운영 등) ①
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, 교	
통사고 상황 파악, 안전사고 방	
지,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다	
음 각 호의 철도차량 또는 철	
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	
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	
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, 방	
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변전소</u> 등 대통령령으로 정	4. 변전소 및 「건널목 개량촉
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	진법」에 따른 건널목
도시설	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